

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사업 리더급연구역량강화(연구혁신형) 2026년도 한-룩셈부르크 양자기술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한국과 룩셈부르크 양국 간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룩셈부르크 양자기술 공동연구사업(파일럿프로그램)」의 2026년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19일

<주무부처>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 경 훈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 본 공고는 한국연구자를 위한 안내사항이므로, 영문공고 별도 확인 필요

목 차

1. 사업개요	1
2. 지원내용	2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4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8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10
6. 선정평가	13
7. 기타사항	15
8. 향후일정[안]	17
9. 적용 법령 및 규정	17
10. 문의처	18

□ 사업명 : 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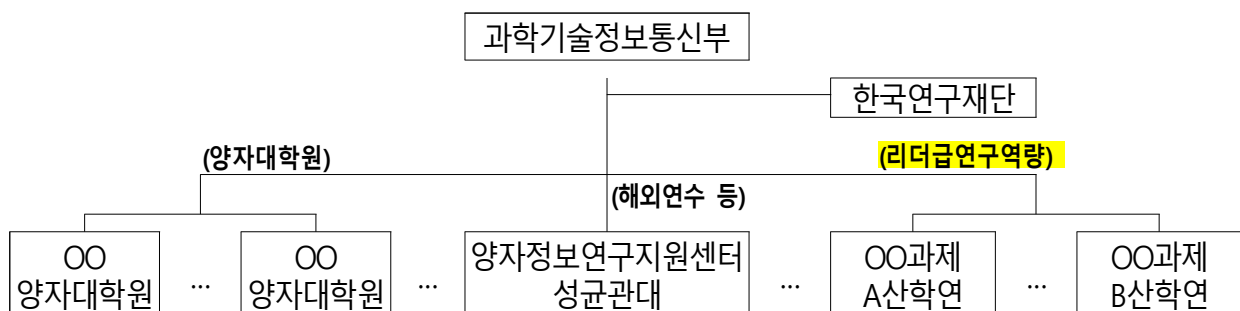
□ 사업목적

- 폭발적 파급 잠재력을 지닌 양자정보과학 분야에 우수 인재가 유입되고 고
급인력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성장 경로를 구축하고 연구 저변을 확대

□ 사업 내용

- (양자대학원 운영) 국내 대학(원)이 연합하여 대학·학제 간 개방형 교육·연구
기반의 양자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체계(양자대학원) 구축·운영 지원
- (리더급 연구역량 강화) 신규 진입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연구소·
대학과의 인력교류 중심 공동연구를 통해 미래 연구주제 발굴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연구혁신형, 전략기술형)
- (장기연수 지원) 석박사, 포스닥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우수 대학·기업·연구소의
관련 연구 프로젝트 및 전문화된 교육과정 참여 지원
※ 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은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 (미래인재유입 촉진) 초중고, 대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양자정보과학 이해도
제고 및 관심 유도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저변확대 등) 양자정보과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활용, 국제 컨퍼런스 개최, 정책 지원 등 추진

□ 사업수행체계



2

지원내용

① 지원 목적

- 한-룩셈부르크 연구자 간 공동연구 촉진을 통해 양국 과학기술 협력발전 도모
- 양국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 중심으로 공동연구 지원
- ※ 룩셈부르크측 지원 주체 : FNR(Luxembourg National Research Fund)

② 지원 분야

- 양자통신 또는 양자컴퓨터 간 인터페이스 및 통신
- 세부 연구분야 예시
 - Quantum transduction(microwave ↔ optical conversion)(양자 트랜스덕션)
 - Photonic interconnects & quantum networking(광 기반 인터커넥트 및 양자 네트워크)
 - Cryogenic classical control & readout electronics(극저온 고전 제어 및 판독 소자)
 - Quantum error correction across distributed nodes(분산 노드 간 양자 오류 정정)
 - Heterogeneous quantum interfaces(이종 양자 인터페이스)

③ 지원조건

- (연구 팀) 한국과 룩셈부르크를 대표하는 공동 연구책임자 2인(양측 각 1인 : PI, Co-PI) 이상으로 구성
- (연구방법) 양자기술과 관련된 응용 중심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양국 간 지속 가능한 연구협력 생태계를 구축을 위한 상호 인력교류 등

④ '26년도 지원 규모 및 선정 주안점

- 지원 규모 및 방식
 - 선정과제 수 : 3개 내외 ※ 양국 간 협의에 따라 선정과제 수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총 1년(12개월, '26.10~'27.9) ※ 룩셈부르크측 과제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연구비 : 과제당 연간 (한국측) 100백만원 이내, (룩셈부르크측) 7만 유로
- ※ 양국 정부(연구관리전문기관)가 과제에 참여하는 자국 연구진에게 각각 지원

< (한국측) 연차별 과제기간 및 과제비 예시 >

보안등급		일반	
과제 형태		일반과제	
예산지원 (안)	총 연구기간	12개월 (2026. 10. 1. ~ 2027. 9. 30.)	100백만원 이내
	1차년도	12개월 (2026. 10. 1. ~ 2027. 9. 30.)	100백만원 이내

○ 주요 평가내용

- 연구 주제/방법론의 독창성 및 양국 공동 연구팀 간의 시너지
 - 국제 협력의 필요성 및 선진 연구 역량의 공유와 자원/인프라 활용
 -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 연구 목표 달성 및 연구 성과 도출의 실현가능성
- ※ 향후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항목 수립 예정이며, 상기 내용 변동 가능

5 사업설명회(Webinar)

- (목적) 양국 간 사업 추진내용 및 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계획 소개 등
- (일시 및 방법) 2026. 4. 15.(수) / 온라인

※ Webinar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일정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에 공지 예정

※ 동 사항은 한국측 연구자에만 해당되며,

특셈부르크측 연구자의 자격 등은 특셈부르크 공고문 참고

□ 신청자격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①항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기업만 해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내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에 근거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 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 단,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에서 제외
 - *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기준 자본총계 + 당해연도 자본금 증가분이 "0" 이상인 경우(단, 자본금 증가분은 상환의무가 없는 보통주(우선주) 자본금에 한함)
-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신청 제한사항

<연구자에 대한 제한사항>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동 사업은 인력 양성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3항 제4호에 따라, 3책5공에서 제외
-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 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연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

-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 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컨소시엄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각 '연구개발과제'별 적용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개발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과제 신청 및 구성에 대한 제한사항>

- **(중복 신청 제한)** 본 공고에 대해 1개의 책임자*로만 신청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연구책임자)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에서 중복신청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상위과제인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까지 평가에서 제외

※ 공동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중복 신청 시 평가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할 것을 권고

- **(동일 사업 중복 수혜 제한)** 동일 내내역사업*의 과제를 주관연구책임자로 수행 중인 경우, 본 공고에 신청 불가 * 양자인적기반조성사업(리더급 연구역량 강화)

- 단, 동일 내내역사업에서 수행 중인 과제가 선정연도 내(2026.12.31.) 최종종료 (연차/단계종료 제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및 수행 가능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 (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차별성 검토 방법: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 **(위탁과제 구성 제한)** 사업 및 과제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전체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동일주제의 위탁과제 금지

<기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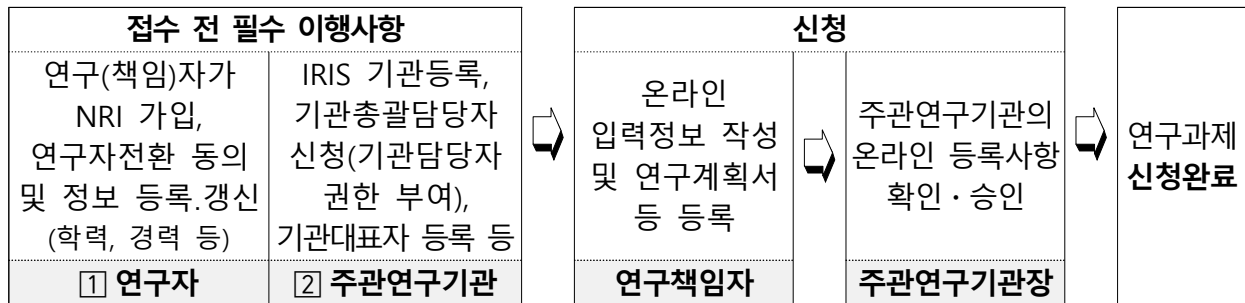
- **(선정 우선순위 제출)** 양자인적기반조성사업(리더급 연구역량 강화) 내 복수의 과제 신청·선정으로 인해 3책 5공 요건 미 충족, 동일 사업 중복 수혜 제한이 예상되는 경우에 우선순위(「(별첨7) 선정 우선순위」양식 참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정 시 이를 고려함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각각 업로드(일반연구개발과제인 경우 공동/위탁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별도 계획서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①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 ① and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②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 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기관보유 시설장비 입력: NRI에 등록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추가

- 시설장비 등록방법: 기관총괄담당자 로그인 >[R&D고객센터]>[보유장비정보] 메뉴에서 등록

< 주관연구기관 선택 시 유의 사항 >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 IRIS 문의처 : IRIS 콜센터 1877-2041/042-862-1500 또는 IRIS 홈페이지 R&D 신문고 활용

-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D 업무포털'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
- 과제 신청 시 연구계획에 부합하는 '국책연구_기획평가전문분야(국책연구사업)'를 선택하여야 함

□ 제출서류

- 한-룩셈부르크 양자기술 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영문) 1부
 - ※ 룩셈부르크측에 제출하는 영문계획서와 동일 서류 제출
 - ※ 계획서 본문(PART2)은 영문만 접수하며, 향후 결과보고서는 한글을 요구할 수 있음
 - ※ 분량 : 10페이지 이내(참고문헌, 연구책임자 이력사항(CV)* 제외)
 - * 연구책임자 이력사항은 한국과 룩셈부르크 각 1부(개인별 2페이지 이내) 등 총 2부를 계획서 본문 뒤에 작성하여 동일 파일로 업로드(별첨서류로 제출X)
- 별첨 서류 각 1부
 - ※ 모든 별첨 서류는 한국측 연구기관만 해당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 필수(해당 시 필수 포함)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

<별첨 서류 목록>

구분	목록	제출주체		
		주관	공동	위탁
별첨1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
별첨2	[필수] 개인정보 ·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	○
별첨3	[필수] 기관 참여 협약서	○	○	○
별첨4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	X
별첨5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	○	○
별첨6	[해당 시 필수] 기관 지원협약서	○	○	○
별첨7	[해당 시 필수] 선정 우선순위 확인서	○	X	X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 2026.5.12.(화) 18:00까지 ※ 룩셈부르크측 접수기한은 2026.5.13.16:00(CET)임.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 2026.5.12.(화) 18:00까지
신청 절차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 (참고사항)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 마감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신청 시 유의사항

- 한-룩셈부르크 공동연구책임자가 동일 서류(연구개발계획서)를 자국측 안내에 따라 제출하며, 한쪽이라도 각국 신청 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미신청한 것으로 간주
 - 한국측 신청기간과 룩셈부르크측 신청기간이 상이한 점을 유의해야함
 - * 룩셈부르크측 접수기한 : 2026.5.13.(Wed) 16:00 CET(한국시간 : 2026.5.14.(Thu) 00:00 KST)
 - ※ 룩셈부르크측 접수시스템(FNR online submission system) : <https://grants.fnr.lu/>
- 연구개발계획서(PART2)는 영문으로만 작성·제출하며, 양국 연구진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연구자의 연구주안점, 연구목표 등의 업무영역 등을 명확히 구별하여 작성
- 한국측 예산편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의거하여 작성
- 본 공고는 한-룩셈부르크 간 양국 정부 합의 하에 추진된 프로그램이므로, 양국의 사업 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응모 과제 수가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재공고가 추진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내용에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 시 필수자료를 포함한 필수 제출 별첨자료를 미작성,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공고 내 명시된 연구개발과제 지원 조건(한국-룩셈부르크 공동 연구책임자 2인 이상의 연구팀 구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 시 평가 제외(사전검토 탈락)
-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의 조정이 가능하며, 양국 간 협의에 따라 선정과제 수 조정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신청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선정 후 주요사항(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영문 공고에 의함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 동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라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수혜* 현황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과제 수행 중 국외 수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권고) 현행화(IRIS 활용)
 - * 국외수혜: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행정적(연구과제, 인력, 장비, 시설) 지원 및 강의·자문·검직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 미포함)
 - ** 지원·지급 출처, 사유, 기간, 내용,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시행령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권장)
 -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판)」(25.9, 한국연구재단) 참조
- (해당 시)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 추진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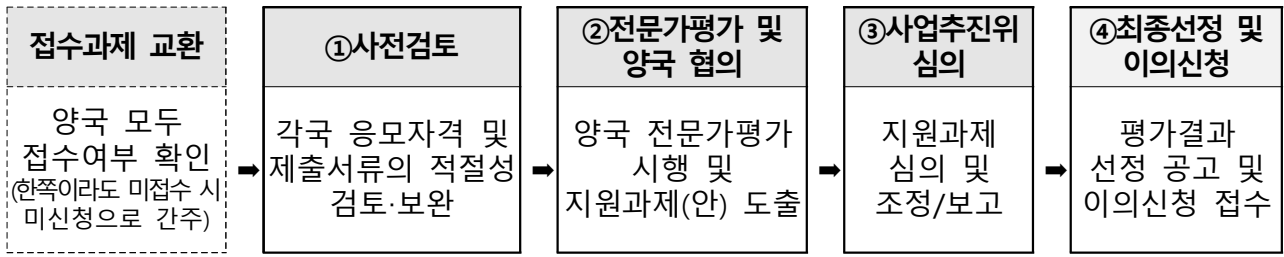
□ 기본방향

-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과제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
-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별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 연구비 등을 조정하고 평가의견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계획서에 반영 후 최종적으로 선정과제 협약체결
 -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응모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함
-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평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그에 따름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연구관리전문기관) 간 협의를 통해 평가 관련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한국측 평가주체 및 방법 등

- (평가주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위원회”)을 통한 평가 실시
- (평가방법) 토론(서면)평가
- 주요 평가내용
 - 연구 주제/방법론의 독창성 및 양국 공동 연구팀 간의 시너지
 - 국제 협력의 필요성 및 선진 연구 역량의 공유와 자원/인프라 활용
 -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 연구 목표 달성 및 연구 성과 도출의 실현가능성
- ※ 향후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항목 수립 예정이며, 상기 내용 변동 가능

□ 평가절차



- (사전검토) 각국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지원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신청 자격,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평가위원회 평가에 앞서 검토

한국측 연구자에 대한 사전검토 항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제출자료 및 정보를 조작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처분이 적용될 수 있음

- 한국측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차별성 검토 시스템 및 평가위원회에서 신청과제에 대한 차별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음
 -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과제로 판명된 경우,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전문가평가 및 양국 협의) 사전검토 요건을 만족하는 신청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항목 및 배점을 기준으로 각국에서 개별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안) 도출
 - (선정평가 세부사항) 양국 연구관리전문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함
 - (차별성 검토) 한국측의 경우, 전문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차별성 검토 시스템을 통한 검증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참고사항으로 제공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과제로 판명 될 시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 <차별성 검토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2. 연구개발 주제·목표·수행방식의 차이점
 - (양국 협의) 양국 연구관리전문기관의 대표(PM 등)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원과제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각국 우선순위 및 협의결과 등에 따라 상위순위 외 과제가 선정될 수 있음
 - ※ 동점 시 처리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으며, 양국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 및 지원과제(안) 도출
- (이의신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필수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 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개인사업자,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 사전조사·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관리,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연 5억원 이상 연구개발과제) 박사급 연구원 참여 권장

- 해당 기관에 소속된 박사급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계상률 50%이상, 최소 1차년도 종료시점 까지 참여를 권장함

☐ 향후 소관 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연구책임자에게 사업 기획·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을 권장함☐ 연구데이터 관리

-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계획서 첨부 양식)

※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

- 선정평가-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을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 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 논문·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 데이터 공개)

□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안내사항

-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제출의무 준수
 -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단계 및 최종평가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 연구개발비의 증액 및 감액을 할 수 있음
 -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7조
-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
 -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기술료 납부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름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 중소·중견·대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대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 중소기업인 경우	국제 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중견기업인 경우	국제 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국제 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 중소기업인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중견기업인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5% 이상

8

향후일정

일정	내용
~2026. 5. 12.(화) 18시까지	신청 마감일 ※ 룩셈부르크측 접수기한은 2026.5.13.16:00(CET)임.
~2026. 5. 12.(화) 18시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6. 상반기	선정평가 실시
2026. 10. 1. 이후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9

적용 법령 및 규정

□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령 및 관련 규정을 따름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연구지원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 과학기술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등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기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등

10 문의처

□ 문의 절차

- (문의 전 확인)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공고문 및 FAQ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아래 문의순서에 따라 문의 진행
- 문의순서
 - (1차)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문의
 - (2차)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 → 한국연구재단 문의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msit.go.kr>) → 알림 → 사업공고
-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신규사업공모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 법,규정,규칙: 「자료실」 →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 ‘공통 법·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관련 규정 확인

□ (문의처) 문의 사항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

※ 담당 PM(단장)에게는 신청 완료 전까지만 문의 가능(신청마감 후에는 기술단 담당 직원(PO, 연구원 등)에게만 문의 가능하며, 단장에게는 문의 불가)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이메일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1877-2041, 042-862-1500) 또는 IRIS 홈페이지 R&D 신문고 활용		
RFP, 접수, 양식 관련 문의	양자기술단	042-869-7837	star0rin@nrf.re.kr
평가 관련 문의	국가전략사업평가2팀	042-869-7745	sohee@nrf.re.kr
룩셈부르크(FNR)측 문의	Helena Burg (Head of International Relations)	-	helena.burg@fnr.lu

붙임 1.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2. 별첨자료 양식
3. IRIS 관련 매뉴얼
4. 영문 공고문